

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관한조례 (안) 심 사 보 고

1999. 7. 13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9년 7월 2일

○ 회부일자 : 1999년 7월 2일

다. 상정일자 :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(1999. 7. 13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조정실장 유 의 재)

가. 제안이유

지방공기업법령의 개정으로 지방공사의 장 후보추천을 위하여
관련조례 제정

나. 주요골자

○ 위원회의 구성 :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7인으로
구성

1.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
 2.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
 3. 당해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
 4. 지방공사의 장 임명대상 지방공사의 감사 1인
- 위원의 임기 : 지방공사의 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해지
 - 회 의 :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 - 후보의 추천 : 지방공사의 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지방공사의 장 후보로 추천, 도지사는 추천된 후보가 공사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추천 요구 가능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전문위원 : 김 동 응)

충청북도 지방공사의 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1999년 1월 19일 개정된 지방공기업법(법률 제5708호) 제5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

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

- 조례제정이 법령에서 위임한 지방공사의 장을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

로 목적과 기능이 명확하고

- 위원회의 구성은 7인으로 하고 도지사, 도의회, 당해공사 이사회 추천 각 2인과 공사의 감사 1인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위원수나 인적구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
- 위원장 선출방법도 당연적으로 하지 않고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한 것은 민주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.
- 회의운영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 확보도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(안)

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설치) ①도지사는 도에서 운영하는 지방공사의 장(이하 “공사의 장”이라 한다) 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.

②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. 단, 공사의 신규설립에 따른 공사의 장 후보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.

1.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
2. 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
3.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
4. 공사의 장 임명대상 지방공사의 감사 1인

②도지사는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4조(위원장)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.

제5조(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
2. 제3조제1항제4호의 감사를 제외한 공사의 임·직원

제6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공사의 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.

제7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도의 과장이 된다.

제8조(공사의 장 후보의 추천) ①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공사의 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는 공사의 장 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도지사는 추천된 후보가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무협조) ①위원회는 공사의 장 후보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